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4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티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34,020원, 지방교육세 1,016,420원, 농어촌특별세 50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가. 원고는 미생물접촉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 9.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25. 지식산업센터인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792-2 평촌스마트베이 제15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취득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redacted]시장은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6. 5.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취득세 11,834,020원, 지방교육세 1,016,420원, 농어촌특별세 508,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하는 수질정화장치는 규모가 큰 기계장치로서 지식산업센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외부공장 등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경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시설용(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2호)이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종국적으로 취득세 등의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2)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제조업자는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해당 부동산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세기포장치의 제조는 공구를 이용하여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이를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인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은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의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제2호 가목),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제2호 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벤처기업법령이 정한 연구개발비 기준을 맞추어 2015. 5. 9.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27

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평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2015. 11. 27.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조항은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을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인정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2015. 11. 27.경에서야 위 조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벤처기업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유진

판사 박수현